

## (위법) 계약해지요구서

M 캐피탈주식회사 귀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본인)은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아 래]

금융 소비자 (계약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남 / 여)			
	주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년	월	일				
해지요구 회신 통지의 방법(택1)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해지요구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동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제출자료]

금융상품명칭			
금융소비자보호법 법 위반사실			
법 위반사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자료 (별지를 통해 추가 제출 가능)			

신청인(본인)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법에서 정한 통지기간 내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통지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통지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위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